경상남도 공고 제2018-139호

2018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8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경상남도**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 시험과목	시험시간
			계	남	여		
			204	164	40		
공개경쟁채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120	100	20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10:00~11:40 (100분)
경력경쟁채용		구조	20	20	-	◇ 필수(3):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10:00~11:00 (60분)
		구급	60	40	20		
		구급상황관리	1	1			
		통신	3	3	-		

○ **창원시**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 시험과목	시험시간
			계	남	여		
			35	33	2		
공개경쟁채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20	18	2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10:00~11:40 (100분)
경력경쟁채용		구조	15	15	-	◇ 필수(3):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10:00~11:00 (60분)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세부내용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과 같음(별첨 1)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시행규칙(별첨 3)

***(생활)영어 :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 공개경쟁채용의 선택과목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에 따라 조정점수제 적용(별첨 4)

※ 사회·과학·수학 과목의 출제범위(별첨 2)

2 시험방법

(제1차)	⇨	(제2차)	⇨	(제3차)	⇨	(제4차)
필기시험	합격	체력시험	합격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인·적성검사 포함)	합격	면접시험

※ (주의) 응시자는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1)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 1선택형, 총점 100점
2)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3)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2)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3)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 2 [별표 7]에 의함(별첨 5)
4)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별표 4]에 의함(별첨 6)
5) 도핑테스트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2014. 12. 31.)「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따라 실시(별첨 7, 별첨 8)

가) 대상자 선정 : 체력시험 응시 대상자 중 7% 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

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및 서류전형

1) 신체검사 :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가 시험실시 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 기관에 제출해야함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별첨 10)

※ 신체검사 수수료는 개인별 납부

※ 신체검사 일정은 지정 종합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2) 인·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3) 서류전형 : 필요서류 제출여부 및 응시자격 요건, 가산특전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심사

4) 신체검사 등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며, 신체검사와 서류전형(인·적성검사 포함)은 일정을 고려하여 교차시행 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방법 :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 실시

2)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이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단,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3 최종합격자 결정 등

가.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나.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대한 조치)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응시자격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사.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3. 시험응시 불가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 불가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계 급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지방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7.1.1. ~ 2000.12.31.
경력경쟁채용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1.1. ~ 1998.12.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1) 공개・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아래의 거주지 요건 중 “1번”과 “2번”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라.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관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바. 자격증(면허증), 경력제한

<table>
<tr><th>채 용
방 법</th><th>분 야</th><th>기준일</th><th>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th></tr>
<tr><td>공개
경쟁
·
경력
경쟁
시험</td><td>전체
(공통)</td><td>응시
원서
접수일</td><td>「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td></tr>
<tr><td rowspan="2">경력
경쟁
채용
시험</td><td>공통</td><td rowspan="2">최종
시험일
(면접
시험
최종일)</td><td>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 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td></tr>
<tr><td>구조</td><td>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육군특전사, 육군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수방사35특공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발급)와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td></tr>
</table>

채 용 방 법	분 야	기준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구급	최종 시험일 (면접 시험 최종일)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의 응급의료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51조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체 근무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구체적 복무확인서 필요)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복무기관에서 발행한 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구급상황관리사)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통신 **(지방소방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운전면허는 원서접수일 기준임

2)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3)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 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공개경쟁 채용 및 경력경쟁 채용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공개경쟁 채 용 · 경력경쟁 채 용	(접수기간) 2018. 2. 21.(수) ~ 2. 27.(화) (09:00~21:00) ※ 공휴일은 제외 (취소기간) 2018. 2. 21.(수) ~ 3. 6.(화) ※ 공휴일은 제외	인터넷으로만 접 수	필기시험	3. 16.(금)	4. 7.(토)	5. 3.(목)
			체력시험	5. 3.(목)	5. 15.(화) ~ 5. 18.(금)	5. 25.(금)
			신체검사	5. 25.(금)	5. 28.(월) ~ 6. 1.(금)	7. 13.(금)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5. 28.(월) ~ 6. 1.(금)	6. 15.(금)
			면접시험	6. 15.(금)	6. 26.(화) ~ 6. 29.(금)	7. 13.(금)

※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제출은 응시자의 서류전형 당일에 관련서류를 본인이 해당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신체검사는 검사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 후 별도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소방직 공무원"란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2) 접수시간 : 09:00~21:00(원서접수 기간 중) ※ 공휴일은 제외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이트(☎ 1522-0660)로 문의

3) 응시수수료 등

- 지방소방사 5,000원

※ 휴대폰 및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처리비용 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마감 후 자격확인 및 환불)

4) 응시원서 사진 제출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가로)×4.5㎝(세로),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임용기관(**경남, 창원**)을 반드시 선택

2)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채용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원서 접수취소 기간 내 취소에 한해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환불

4)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단, 자격증 등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5) 응시원서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6) 자격, 면허, 경력,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심사(서류전형) 실시

7) 응시표 출력이 가능한 기간 : 2018. 3. 16.(시험장소 공고일부터)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출력 가능

8) 응시자는 매 시험 당일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을 함께 지참하여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함

-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보건복지부(☏ 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선택 하여야 함

나.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개경쟁 채용시험(일반소방 분야)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1%～5%

- 필기시험 매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2)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별첨 9)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3)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 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함

※ 가산자격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2)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폐지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서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될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에 포함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란(소방직 공무원)에 공고함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음(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마.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함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응시자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아.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전량 회수함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차.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 공고내용에 관한 사항 : 경상남도 소방행정과(☎ 055-211-5314)

경상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소방직 공무원) 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별첨 2]

사회·과학·수학 과목의 출제 범위

영 역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별첨 3]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첨 4]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첨 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일으키기(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달리기(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첨 6]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별첨 7]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지 참조)은 금지됩니다. (별첨 8)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 시료는 응시자의 소변으로 하고, 시료수집책임관 관리하에 소변 채취 통에 90㎖이상이 되도록 수집한다.

○ 응시자는 시료채취 용기를 직접 선택한 후, 시료수집책임관이 A시료병에 60㎖, B시료병에 30㎖의 양으로 나누어 넣은 뒤 밀봉하여 응시자가 직접 확인한다.

○ 응시자가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는 시료채취 용기는 응시자 또는 시료수집책임관 입회하에 다룬다.

○ 시료채취용기의 관리번호와 성명, 응시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개인식별 번호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응시자가 확인・서명을 한다.

○ 시료수집책임관은 소변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정비중(굴절계 1.005, 시료스틱 1.01)이하인 경우에 응시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보관운송책임관이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상남도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분석결과 비정상(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치료 목적 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제출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한다

- **(B시료분석 요청 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합격)으로 최종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양성)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붙임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체력시험일 제출기한 공지)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별첨 7-1]

동 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연 락 처 :

20○○년 월 일

위 본인은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첨 7-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성 별	남 □, 여 □
3. 생년월일		4. 응시번호	
5. 핸 드 폰		6. 이 메 일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 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 전공분야 :

주소 :

전화 : 팩스 : 이메일 :

서명 : 날짜 :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 날짜 :

부모/보호자 서명 : 날짜 :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별첨 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Ⅰ.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4. 마약류 : 총 11종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Ⅱ.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별첨 9]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가점비율 /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공학,전기안전,화공안전,비파괴검사,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에너지관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그린전동자동차,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임베디드,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간공학,화재감식평가,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실내건축,거푸집,건축도장,도배,미장,방수,비계,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생산자동화,농업기계,설비보전,농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약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통신기기,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화재감식평가,방사선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2급	
	소방시설관리사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 초과 시 5%에 기재)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별첨 10]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